이천 백사지구 1BL 신안실크밸리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아래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입장 및 관람 시 관람인원, 운영시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관람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관람 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 측정 시 37.5도를 넘은 경우
- 기타 견본주택 방역계획에 불응하는 경우
- 정부의 방역대책 변동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등의 일정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당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지 및 세대 소개 영상과 VR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관람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당 사업지 홈페이지(http://silkvalley-ic.co.kr/)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내방, 전화문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화상담 신청이 집중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고자 하는 공급 유형과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개정된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3,25. 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이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 위 포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점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25.)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 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2 에 따라 미성년자가 청약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목에 따른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말하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의미하며, 청약 자격 확인 시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등을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가족에서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본인이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의미합니다(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6개월 이상 + 예치금	6개월 이상 + 예치금	6개월 이상 + 예치금	12개월 이상 + 예치금	12개월 이상 + 예치금	12개월 이상 + 예치금	가입자	
세대주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비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철거민,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지역별 및 면적별로 기준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할 것을 의미합니다.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아파트(특별공급, 일반공급)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아파트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0	Χ	X

- 단,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배정합니다.
 -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우선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의 신청 여부는 입주자 선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화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 ③인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 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ilkvalley-ic.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 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 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박자 처범(「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외 지역 모든 주택유형에 상관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0.02.21. 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의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 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2년 04월 04일(월)	2022년 04월 05일(화)	2022년 04월 06일(수)	2022년 04월 12일(화)	2022년 04월 25일(월) ~ 27일(수)				
방법	인터넷청약(09:00 ~ 17:30)	인터넷청약(09:00 ~ 17:30)	인터넷청약(09:00 ~ 17:30)	개별 조회(청약Home)	견 본주 택 내방(10:00 ~ 16:00)				
장소	한국부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 애플리케이션]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ı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주택과 13731호(2022.03.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천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BL 신안실크밸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1-11외 33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11개동 총 880세대
 - [특별공급 464세대(일반[기관추천] 88세대, 다자녀가구 88세대, 신혼부부 174세대, 노부모부양 26세대, 생애최초 88세대) / 일반공급 4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기하며, 본 건축물은 대지반가속도0.204(g), 내진능력(MMI등급)VII 입니다.
- 입주시기: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m, 세대)

주택	TURKU		TCU±J	OFFIE	주택공급면적		기타	기타 게이번대	세대별 총	총 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표기	주거전용	주거 공용	소계	공용면적	기다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세대수	우선배정
		01	070.7337	70	70.7337	21.8972	92.6309	57.9176	150.5484	43.6733	172	17	17	34	5	17	90	82	11
		02	078.9971A	78A	78.9971	23.6192	102.6163	64.6838	167.3000	48.7753	336	34	34	67	10	34	179	157	19
민영	2022000139	03	078.9942B	78B	78.9942	23.9946	102.9888	64.6814	167.6702	48.7736	150	15	15	30	5	15	80	70	8
주택		04	084.9339	84	84.9339	25.2663	110.2002	69.5449	179.7450	52.4409	216	22	22	43	6	22	115	101	12
		05	084.8483T	84T	84.8483	27.4603	112.3086	69.4748	181.7834	52.3881	6	-	-	-	-	-	-	6	-
					Ę	계					880	88	88	174	26	88	464	416	5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48%]			TLT [(00/]
주택형	공급	충별	해당				1차(5%)	2차(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8%)	잔금 [42%]
(약식표기)	세대수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 이내	2022.09.20	2023.01.20	2023.05.20	2023.09.20	2024.01.20	입주시
		1	6	78,402,000	245,598,000	324,000,000	16,200,000	16,2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25,920,000	136,080,000
		2	11	78,402,000	252,598,000	331,000,000	16,550,000	16,55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26,480,000	139,020,000
		3	11	78,402,000	259,598,000	338,000,000	16,900,000	16,9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27,040,000	141,960,000
70	172	4	11	78,402,000	266,598,000	345,000,000	17,250,000	17,25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27,600,000	144,900,000
		5~9	55	78,402,000	273,598,000	352,000,000	17,600,000	17,6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28,160,000	147,840,000
		10~14	53	78,402,000	280,598,000	359,000,000	17,950,000	17,95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28,720,000	150,780,000
		15층이상	25	78,402,000	287,598,000	366,000,000	18,300,000	18,3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29,280,000	153,720,000
		1	13	87,561,000	268,439,000	356,000,000	17,800,000	17,8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28,480,000	149,520,000
		2	19	87,561,000	276,439,000	364,000,000	18,200,000	18,2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29,120,000	152,880,000
		3	19	87,561,000	284,439,000	372,000,000	18,600,000	18,6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29,760,000	156,240,000
78A	336	4	19	87,561,000	292,439,000	380,000,000	19,000,000	19,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0,400,000	159,600,000
		5~9	95	87,561,000	300,439,000	388,000,000	19,400,000	19,4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1,040,000	162,960,000
		10~14	88	87,561,000	308,439,000	396,000,000	19,800,000	19,8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1,680,000	166,320,000
		15층이상	83	87,561,000	316,439,000	404,000,000	20,200,000	20,2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32,320,000	169,680,000
		1	8	87,558,000	263,442,000	351,000,000	17,550,000	17,55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28,080,000	147,420,000
		2	8	87,558,000	271,442,000	359,000,000	17,950,000	17,95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28,720,000	150,780,000
		3	8	87,558,000	279,442,000	367,000,000	18,350,000	18,35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29,360,000	154,140,000
78B	150	4	8	87,558,000	287,442,000	375,000,000	18,750,000	18,75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0,000,000	157,500,000
		5~9	40	87,558,000	295,442,000	383,000,000	19,150,000	19,15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0,640,000	160,860,000
		10~14	40	87,558,000	303,442,000	391,000,000	19,550,000	19,55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1,280,000	164,220,000
		15층이상	38	87,558,000	311,442,000	399,000,000	19,950,000	19,95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1,920,000	167,580,000
		1	10	94,142,000	284,858,000	379,000,000	18,950,000	18,95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0,320,000	159,180,000
		2	12	94,142,000	292,858,000	387,000,000	19,350,000	19,35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0,960,000	162,540,000
		3	12	94,142,000	300,858,000	395,000,000	19,750,000	19,75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1,600,000	165,900,000
84	216	4	12	94,142,000	308,858,000	403,000,000	20,150,000	20,15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32,240,000	169,260,000
		5~9	60	94,142,000	316,858,000	411,000,000	20,550,000	20,55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32,880,000	172,620,000
		10~14	59	94,142,000	324,858,000	419,000,000	20,950,000	20,95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33,520,000	175,980,000
		15층이상	51	94,142,000	333,858,000	428,000,000	21,400,000	21,4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34,240,000	179,760,000
84T	6	18, 21	6	94,047,000	392,953,000	487,000,000	24,350,000	2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38,960,000	204,54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m)	070.7337	078.9971A	078.9942B	084.9339	084.8483T
- 견 본주 택 등의 약식 표기	70	78A	78B	84	84T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다로그, 홍보 제작물 등에서는 약식으로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넓이표시 대신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하였으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충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세대별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른 세대별 대지지분의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 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유형별·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70	78A	78B	84	합계
	국가유공자	3	6	3	4	16
	장기복무 제대군인	3	6	3	4	16
일반(기관추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3	6	3	4	16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3	6	3	4	16
	장애인	5	10	3	6	24
	소계	17	34	15	22	88
	경기도(50%)	9	17	8	11	4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50%)	8	17	7	11	43
크르 0日	소계	17	34	15	22	88
	신 혼부 부 특별 공급	34	67	30	43	17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10	5	6	26
	생애최초 특별공급	17	34	15	22	88
	합계	90	179	80	115	464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공급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이하인 분(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분(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이하인 분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분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하신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무주택 요건 및 중복청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 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 비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됨
-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하는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가입기간 요건 이상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분 ②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가입기간 요건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가입기간 요건 이상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공급유형별 가입요건 기간
 - 일반(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개월(단, 기관추천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2개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전용면적)	이천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합니다(은행 창구 접수 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청약 시 둘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구비서류 미제출 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분도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요건

유의사항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표의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요건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추천기관

특별 공 급 유형	추천기관	비고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불필요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불필요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 면적별/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 면적별/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 면적별/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각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 신청하는것과 별도로 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 배정에서 제외되고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 입주자 또한 동일하게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을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유형별 해당 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며,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8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태아 또는 입양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 자녀를 둔 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또는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 포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점수일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물량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접수 결과 미달 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이천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우선 공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III 저어 A	총배점	배점기준		ui a	
평점 <u>요소</u>	중매점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 수(1)	40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35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30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 수(2)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 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겨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세대 구성(3)	5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10년 이상	20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0년 이상	15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산정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3):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7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 소득 기준은 아래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참고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 자녀를 둔 신청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또는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고그0천	78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기준소득, 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상위소득, 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상위소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괴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의미하며, 연간소득 및 근무월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연간소득	근무월수
근로자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 탈락자 포함)
- ③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제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자녀가 없거나,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
- ②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또는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와 무관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이천시 거주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2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부양'의 기준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계속하여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요건 및 직계존속 부양을 제외한 청약 요건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요건과 동일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1년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이혼 또는 사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포함1인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 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아래 소득기준표 참고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및 혼인, 자녀, 소득, 재산 요건을 제외한 청약 요건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요건과 동일합니다.(입주자저축 가입 1년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고그아서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 유형		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구분 (70%)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추첨제 (30%)	1인가구	160% 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의미하며, 연간소득 및 근무월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연간소득	근무월수
근로자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산 과세대상급여액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
- ③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총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이천시 거주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관련 안내(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자산 보유 기준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3억 3,100만원	건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이하	이하		T-i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소득 관련 기타 안내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Ш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두지

■ 일반공급 신청 관련 안내사항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2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또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면적은 "저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건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 사항을 적용받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밝혀질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②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④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전용면적)	이천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은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서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앙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부앙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또한 부앙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앙가족 산정 시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혼인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 및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청약가점제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구분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 서류 등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 주민등록표 등본
① 무주택 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2 30 1 2 2 3 2 2 2 3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2	25	1명	10	5명	30	- 무진증목표 중(조건, 기독관계중경시 -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시
부양가족 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1)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명	20			- (2)만30세 이상 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3)공통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 제28조제6항에 따라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하는 분은 1순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내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추첨제 우선공급* 적용추첨에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업지역, 수도권, 광역시 내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추첨제 대상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②나머지 25%의 주택(이에서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③위 ①및②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③위 ①및②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로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정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절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예비입주자(에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입주자(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미계약 또는 계약하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이 때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반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 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V

청약 신청 관련 안내

■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유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2022.04.04(월) (청약Home : 09:00 ~ 17:30) (견본주택 : 10:00 ~ 14: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http://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Home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인터넷 청약 또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정보취약계층에 한함)	
OIHLAT	1순위	2022.04.05(화) 09:00 ~ 17:30	인터넷 청약 (PC, 스마트폰)	 인터넷 청약 또는	
일반공급	2순위	2022.04.06(수) 09:00 ~ 17:30	(I C,)	청약통장 은행 가입창구	

- ※ 스마트폰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인터넷 청약 시 청약일 이전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등을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에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으로만 청약신청을 접수하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런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 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일반공급 신청 관련 안내사항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 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시.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청약Home 및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	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 제출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일반 공급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도장 대조필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조필)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 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서류 검수 안내

■ 일정 안내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예비입주자 예비순번 발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일시 : 2022.04.1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또는 스마트폰 앱 조회	■ 일자 : 2022.04.13(수) ~ 2022.04.22(금) ■ 시간 : 10:00 ~ 17:00 ■ 장소 : 당 사업지 견본주택(이천시 사음동 644-3)	■ 일자 : 2022.04.25(월) ~ 2022.04.27(수) ■ 시간 : 10:00 ~ 16:00 ■ 장소 : 당 사업지 견본주택(이천시 사음동 644-3)
이바다고그	1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	※코로나19관련 방역지침 등에 따라 일정 및 시간이	※코로나19관련 방역지침 등에 따라 일정 및 시간이
일반공급	2순위	⁷ 중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은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단,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 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용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통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 체결 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등의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의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된 이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silkvallev-ic.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2.04.12(화) ~ 2022.04.21(목) / 10일간
인티	ᆟ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유대는 군시시미스	제공일시	2022.04.1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자조회] 등 당첨자 발표장소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방법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 일정(서류제출, 동·호수 배정, 계약 체결 등)은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세대 및 미계약분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세대 및 미계약분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 여부 및 부적격 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인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익로부터 60일까지(예비인주자가 모두 소진될 경우 그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순위 예비입주자의 가점보다 높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이 가능하나, 서류 확인 절차로 인해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적정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전, 아래 [표1] 및 [표2]를 참고하시어 부적격 여부 및 해당 사항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당첨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검증서류는 본인의 당첨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비점이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능 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가점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으로만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해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하여 청약자격 검증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착오 등에 따라 잘못 입력된 경우 청약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 자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 [표1] 및 [표2]에 명시된 서류 외 다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계약 체결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야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해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간,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주택법」제65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서류 발급 및 제출 시 유의사항(특별공급·일반공급 공통)

- 모든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확한 청약 자격 검증을 위해, 발급받으시는 서류는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 시 "전체포함" 또는 "상세"로 발급).
- 2005.07.0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전체포함"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 세대 구성사유,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성명, 주민번호 등을 모두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포함) 제 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서류(예비입주자 포함) [표1]

78	제출유형		701112	W-7-1-	
구분	필수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특별공급 공통서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스트리 이 되었어 가족하는 1이를 이사 자기보다 그이어 기타되었(스트리) 기조된 된것으로 받아받는 것이 드라다기가 1이를 이나 많다.
		0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25년 이상 명시]
		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에 한함)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3] 참고
기관추천		0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를 통해 접수함 / 인터넷신청의 경우 제외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등본 등재에 한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더기구 특별공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유산관련 진단서 등(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 비치
		0	입양 관련 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년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증빙서류	성년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4] 참고 ■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4] 참고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등본 등재에 한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유산관련 진단서 등(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특별공급		0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 비치
		0	입양 관련 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0	비사업자 확인 각서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작성,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 비치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층족)로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겨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0	기타 가점 확인 서류	-	■ 기타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고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년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증빙서류	성년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4] 참고 ■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4] 참고
생애최초 트병고그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표5] 참고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등재를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가 동일 등본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층족)로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하여 발급
부적격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및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자	0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기타 해당하는 부적격 내용 소명을 위해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0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당첨자)	■ 인감증명서 대조필, 본인 발급용에 한함
	0	위임장	본인(당첨자)	■ 대리인에게 서류 제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0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서류(예비입주자 포함) [표2]

구분	제출	유형	구비서류	바그기즈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u>TE</u>	필수	해당자	구비시큐	발급기준	구기자류 세월대경 및 유의자영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11177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공통서류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예비입주자 포함)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25년 이상 명시]		
		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에 한함)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3] 참고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해당 서류를 피부양 직계존속(부모님 등) 기준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괴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		
	▶ 미혼연	· 인 직계비속		· 서류를 피부양 직계비	속(자녀 등) 기준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가림 없이 청약자 및 세대원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전체포함" 또는 "상세"등으로 발급하여야 자격검증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등본 등재에 한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및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자	0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기타 해당하는 부적격 내용 소명을 위해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0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당첨자)	■ 인감증명서 대조필, 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제출 시	0	위임장	본인(당첨자)	■ 대리인에게 서류 제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0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표3]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필수)

78	제출	유형	그비나르	발급기준	ᄎ고니르 제츠대사 미 OOLL하
구분	필수	해당자	구비서류	걸답기단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 및 생업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에 <u>되는</u> 구시 (단신부임)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또는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이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4]

해당자격	해당 유형	소득입증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필수]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 특별공급 신청 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또는 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필수]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 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필수]	①,② 해당 직장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가림 없이 청약자 및 세대원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전체포함" 또는 "상세"등으로 발급하여야 자격검증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①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TIGGGTI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 국민연금공단 또는 세무서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국민연금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 날인)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세무서 또는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Ц	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인 날인 필수] ②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비사업자 확인 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 사업주체는 자격 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통해 적격 여부가 확인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5]

서 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필수]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또는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필수] ③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직인 날인 필수]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또는 세무서

■ 소득 관련 기타 안내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등)은 직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되며,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 증빙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VI

공급계약 체결 안내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하시어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정책 등에 따라 계약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구분	계약일시	장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2.04.25(월) ~ 2022.04.27(수)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644-3)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78	제출유형		70103	바그기조	*기나크 제초만나 미 COUI*
구분	필수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입금확인증	-	■ 이체확인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 등
특별공급 공통서류	0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대조필, 본인 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체결 불가
		0	자격검증서류 일체	해당자	■ 서류 접수 기간 내 제출자는 제외, 일부 서류 미비 시 제출 후 계약 체결 가능
		0	추가 개별통지서류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받은 서류가 있는 경우
대리인		0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당첨자)	■ 인감증명서 대조필, 본인 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체결 불가
신청 시		0	위임장	본인(당첨자)	■ 대리인에게 서류 제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0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포함) 제 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구분 금융기관(은행)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204-310719	신안건설산업(주)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계약금 납부는 계좌로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및 수표 등은 일체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이 오기 또는 누락된 경우 필히 사업주체로 연락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하여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외로 수납된 금액은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금 후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되며,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이즛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및 선정순위가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자에게 그 결괴를 통보하며, 해당자는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및 신청내용이 정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부적격자로 간주되어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 경우,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에 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가능하나,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 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단. 일반공급에 한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해당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 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대상지 인근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2020.02.21.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며, 본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부적격 당첨자 관련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관련)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해당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해당 명단에 등재된 부적격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 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단, 청약 각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순위별 청약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소명 없이 당첨자로 인정되며, 가점 오류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의 재산정한 가점이 후순위 당첨자보다 높거나, 당첨되기 위한 최저가점보다 높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입주자 선정 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호 참고).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분양권 전매 시 계약자(원분양자)는 계약금 전액(총 공급대금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킨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및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분양권 매도자) 및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전매행위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는 등 규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이에 대한 문제 및 제반사항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거나 법인일 경우, 계약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피해를 보호하지 않으며, 분양권 매수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제 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을 통해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 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 개시일 전일까지 입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과 관련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관계법률의 변경 및 금융 관련 정부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고,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귀급기관(제1·2 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목적입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계약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비라며, 이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및 대출 불가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이천시)이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 대출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에 한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 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 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의 경우 분양대금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거래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가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 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계약자의 사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납부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10%) 완납 후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금이 일부라도 미납된 경우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VII

선택품목 안내 [발코니 확장, 옵션 품목, 마이너스옵션]

■ 발코니 확장 관련 안내

1)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

(단위: 원, VAT포함)

고대치 -	7202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 시	2023.04.20	입주 시
70	12,600,000	1,260,000	2,520,000	8,820,000
	13,900,000	1,390,000	2,780,000	9,730,000
78B	14,000,000	1,400,000	2,800,000	9,800,000
84	14,900,000	1,490,000	2,980,000	10,430,000
84T	15,300,000	1,530,000	3,060,000	10,71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옵션품목 납부계좌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구분 금융기관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804-301063	신안건설산업(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납부계좌로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플러스 옵션 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전 필히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계약금 납부는 계좌로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및 수표 등은 일체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이 오기 또는 누락된 경우 필히 사업주체로 연락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하여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후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되며,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품목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을 원하시는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 및 견본주택에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주택형별 상이), 설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공동주택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에 의한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 조달 및 계약 세대 내부 공사 일정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간 이후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키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을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혹통, 선혹통 박스가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필요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유형,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기기(가스쿡탑, 렌지후드 제외) 일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품목 및 가전제품 등 플러스옵션 품목의 선택이 불가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와 확장형 세대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세탁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품목을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또는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 시 관계 법령에 의거 인근 세대 입주자의 동의 등이 필요하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수전이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에만 수전이 설치되며, 발코니 확장부에는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과 대피공간, 실외기실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특성상 출입문 결로(온도차)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품목 (마감·공간 특화 옵션 및 가전제품)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1) 건축 품목

	세부내용		주택형				
품목			70	78A	78B	84	84T
	주방 벽 +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3,170,000	2,870,000	2,990,000	3,060,000	3,050,000
마감재	거실, 주방, 팬트리 바닥	포세린 타일(600*600)	1,770,000	2,890,000	3,120,000	2,540,000	2,600,000
	거실, 주방 바닥 (독립형 다이닝 선택 시)	포세린 타일(600*600)	-	3,080,000	-	2,790,000	-
공간옵션 독립형 다이닝	가구(장식장 포함) / 벽면(78A: 엔지니어드 스톤, 84: 대형 포세린타일)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및 우드패널 포함) / 확장조명기구 / 다기능 일괄소등 스위치 / 빌트인 콘센트 아일랜드 렌지후드 / 아일랜드 가스 연장배관 (주방 TV 미설치)		-	7,700,000	-	8,200,000	-
가구	현관, 침실	현관 중문 / 신발장 내 에어브러쉬 침실2 붙박이장(옷장형)	2,080,000	2,160,000	2,090,000	2,170,000	2,340,000
조명, 주방TV, 스위치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	조명 / 주방 TV / 다기능 일괄소등스위치	730,000	790,000	-	760,000	810,000
식탁, 조명, 주방TV, 스위치	식탁 /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및 우드패널 / 복도 단천장(간접조명 포함) / 주방 TV / 다기능 일괄소등 스위치		-	-	2,470,000	-	-
	1대	부부욕실 및 공용욕 실 중 택1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욕실 복합환풍기	2대	부부욕실 + 공용욕실	770,000	770,000	770,000	770,000	770,000
O UEA	부부욕실 아	메리칸 스탠다드 변기 및 수전류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욕실특화	공용욕실 아메리	칸 스탠다드 변기, 세면대 및 수전류	1,540,000	1,540,000	1,540,000	1,540,000	1,540,000

(단위 : 원, VAT포함)

- 주방 벽 및 상판 엔지니어드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방 벽 및 상판은 각각 도기질 타일과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됩니다.
- 바닥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바닥은 안방 및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조명, 주방TV, 스위치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간접조명이 포함되지 않은 우물 천장, 일반 주방TV, 일반 일괄소등스위치로 적용됩니다.
- 상기 플러스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 및 사양별로 사이즈가 상이하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세린타일 바닥은 자재 특성 상 무광이며 색상 및 무늬가 균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가 바닥으로 줄눈색상이 미색될 수 있으며 들뜸현상이 발생할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독립형 다이닝 선택 시 주방TV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는 현관 일괄소등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아 소등되지 않습니다.
- 상기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전 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설치위치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 액	비고
	BESPOKE 빌트인 냉장고 (변온, 냉장, 김치)	삼성전자	RZ24Z59GOAP RR40A7995AP RO34A7945LB	6,500,000	
주방	하이브리드 전기쿡탑	삼성전자	NZ63T5601AK	550,000	
	BESPOKE 인덕션 전기쿡탑	삼성전자	NZ63T8858XW	1,280,000	
	BESPOKE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T8075LB	1,430,000	
드레스룸	의류관리기	삼성전자	DF10T9700CG	1,870,000	

- 가전제품 옵션은 주방 및 드레스룸의 구조 등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각 전자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전기쿡탑, BESPOKE 인덕션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 가스쿡탑이 제외되며, 상기 금액은 기본 제공 가스쿡탑 차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BESPOKE 빌트인 냉장고(변온, 냉장, 김치) 선택 시 해당 주방가구 변형에 따른 가구 변경 시공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는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되거나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3)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설치대수 설치위치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 액	비고	
주택형	걸시네구	실시되시	세호사	실내기	실외기	ठघवन	<u> </u>	
	2대	거실 + 안방		R-W0600C2S(거실)	RPUQ025S2R	3,190,000		
70	3대	거실 + 안방 + 침실(택1)		R-W0200C2S(안방)	RPUQ030S2R	4,400,000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R-W0200C2S	RPUQ040S2R	5,610,000		
	2대	거실 + 안방			RPUQ025S2R	3,300,000		
70.4	3대	거실 + 안방 + 침실(택1)		R-W0600C2S(거실)	RPUQ030S2R	4,510,000		
78A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R-W0230C2S(안방)	RPUQ040S2R	5,610,000		
	5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RPUQ050S2R	6,710,000	
	2대	거실 + 안방	엘지전자(주)		R-W0600C2S(거실)	RPUQ025S2R	3,300,000	
78B	3대	거실 + 안방 + 침실(택1)		l F	RPUQ030S2R	4,510,000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R-W0200C2S	RPUQ040S2R	5,610,000		
	2대	거실 + 안방				RPUQ030S2R	3,410,000	
0.4	3대	거실 + 안방 + 침실(택1)			R-W0720C2S(거실)	RPUQ040S2R	4,620,000	
84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R-W0230C2S(안방) R-W0200C2S	RPUQ050S2R	6,160,000		
	5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_		RPUQ060S2R	7,260,000		
	2대	거실 + 안방		R-W0720C2S(거실)	RPUQ030S2R	3,410,000		
84T	3대	거실 + 안방 + 침실(택1)		R-W0230C2S(안방)	RPUQ040S2R	4,620,000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R-W0200C2S	RPUQ050S2R	6,160,000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단종 등의 이유로 상기 각 제품 모델의 공급이 불가할 경우,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 안방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총 2개소 및 냉매 배관과 콘센트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에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 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표에 구성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는 등기구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상기 판매가는 해당 매립배관 및 콘센트 설치비용이 감액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4) 플러스옵션 대금 난부계좌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금융기관	계작번호	예금주
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04-303494	신안건설산업(주)

- 상기 계좌는 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로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전 필히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계약금 납부는 계좌로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및 수표 등은 일체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이 오기 또는 누락된 경우 필히 사업주체로 연락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하여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후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되며,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플러스옵션 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공급금액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납입 일정은 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각 옵션의 납부기일 및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한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설계 및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임에 따라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시중 판매 제품 등과 비교 검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품목 설치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및 해당 법령의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안내

1) 개요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희망 시 일괄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개별적인 선택 품목은 불가합니다.
- 자재 조달 및 계약 세대 내부 공사 일정 등 공사여건에 의해 계약 체결 기간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능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품목
바닥재	거실, 주방 및 식당, 복도, 침실(마루, 걸레받이 포함), 현관(타일, 엔지니어드 스톤), 발코니(타일), 실외기실(타일) 등 일체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방수 및 몰탈, 발코니·실외기실 우수 및 배수배관
벽, 천장재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 아트월, 주방벽 마감, 가구 픽스 판넬,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등 일체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매입 등기구 포함) 일체	전기 배관배선,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벽(타일), 바닥(타일), 천장재, 석재(강화석 선반),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 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등 일체	방수(바닥, 벽체), 바닥몰탈,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및 오배수 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및 육가, 전기 및 통신 배관배선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 마감, 주방 수전, 싱크볼, 쿡탑, 후드, 주방 태블릿거치대 등의 주방 빌트인 가전제품류 일체	소방 관련설비, 설비배관, 전기 및 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시스템가구류 등 가구류 일체 및 액세서리류 일체	-
창호 및 기타사항	창호(중문, 목창호 문틀, 문선,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 발코니 도어, 대피공간 도어, 실외기실 도어,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70	78A	78B	84	84T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25,414,000	28,153,000	28,255,000	30,234,000	30,812,000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게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을 제외하고는 미선택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 등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계약 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별지1] 의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 분양 계약 시 선택해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옵션 세대 동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기되는 인접 세대의 민원 등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계약자는 사업주 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및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 계약 체결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조달 등의 문제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변경취소 포함)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은 계약자의 자유이나,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등이 훼손될 경우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레인지 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한 레인지 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쿡탑이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경우 소방법에 의거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위생도기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VIII

단지 여건 및 설계 관련 사항

■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변경 승인된 인·허가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라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07.0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착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지면적 및 지분 감소에 따른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에 공원묘원(이천시립추모의집) 및 다수의 개인분묘, 공장(한일식품 등)이 형성되어 있어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미관상 불리할 수 있사오니 청약 및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로 인한 이의제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및 축사·공장 등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단지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촉진지구 내 공원 지하에 설치된 유수지(저류조)는 본 개발에 따른 우수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서 입주 후 입주민들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며, 유수지(저류조)의 유지·관리로 인한 소요비용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배정과 관하여 초등학교는 "도지초등학교", 중학교은 "백사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천 관내 고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계획세대수 및 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 변경 등으로 학교 배정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보육시설, 문고,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 본 사업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방식이 가공지역으로 특고압 전주가 단지 주변으로 설치되어 미관상 불리할 수 있으며 추후 이로 인한 이의 제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도의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및 차량게이트 설치 위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당초 파잌기초로 설계되어 있는 일부 주동 건축물(105동 109동 110동 111동)에 대하여 현장 지반개량공사를 통한 지내력 기초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 체격 시 이에 대한 동의서에 승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을 요하는 사항(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 선정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에 등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의 자재는 부득이한 경우 동질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에 거립되는 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변경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인·허가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유상)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타입별 기본 제공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드레인, 선홈통,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설치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천장의 몰딩, 세면대 선반 규격, 현관디딤판, 타일 나누기 등은 본공사 시 사용성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공급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신안건설산업(주) 현장별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을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주진입은 각 동 배면의 주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하며,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 옥외공간의 식재 및 패턴디자인은 추후 시공 시 구조적인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또는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공원계획 및 녹지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강친환경 주택 인·허가 지침사항에 따라 단지 주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대지경계 주위 전선 지중화 작업이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입주 시 지상에 전신주 및 전선이 위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 전후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서 시선 간섭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1층 세대의 경우 하층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및 훼룩, D.A 등 부대복리시설로 인하여 소음, 냄새,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배치 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오·우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 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인·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인접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계량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주동 벽면에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노출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비상시 소방용 안전매트 사용구간 장소에는 교목 및 관목이 식재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일부 소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 수전 및 배수가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와 배수 물막힘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바닥, 벽, 천장)만 제공되며, 그 외 공사는 제외됩니다.
- 단지 외곽 일부 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층에 설치되며, 설비 일체는 단지여건, 신호강도, 통신사업자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거나 개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인·허가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지상 D·A(드라이에어리어)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심의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L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주방 발코니 및 비확장 안방 발코니는 물사용 공간으로 바닥 구배가 적용되어있으며, 실내화 걸림 등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지분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등급(MMI등급) VII등급이 적용됩니다.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바닥에 충간소음 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충간, 세대 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오·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인접 촉진지구 내 개발예정도로(17M) 및 국지도 70호선(이여로)로 인하여 소음, 매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보행춬입구는 주춬입구 및 부춬입구 2개소로 총 3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동 축입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진출입구는 주출입구(촉진지구 내 개발예정도로 인접) 및 부출입구(촉진지구 내 개발예정도로 인접) 총 2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 출입 시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 1층에 주민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통로와 인접하여 소음, 냄새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인·허가 진행 시 위치 및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직 간접적인 소음, 냄새,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보관소)로 인해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하 3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획은 주차차단기 위치에 따라 주거 주차구획과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1층, 지하3층 일부구간은 2.7M이하로 계획되어 있어 소형 택배차량, RV차량,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량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소형 택배차량은 지하 2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3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연결 층수 및 주차구역(주차대수)은 상이합니다.
- 주차구획은 주거 1,266대, 근린생활시설 8대로 총 1,274대(경차80대, 장애인주차 76대, 전기차주차 14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7개소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 및 사양, 창호 및 창틀 색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형태에 따라 이삿짐차량 진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구성 및 시설물은 실시공 시 확정되며 설계도면 및 분양카탈로그 등 홍보물 상의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마감은 석재 및 석재뿜칠, 페인트로 시공되며 적용 비율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1층 2,500mm, 기준층 및 최상층은 2,300mm로 시공되며, 실시공 시 경미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형을 이용하여 데크(Deck)층을 설치하였으며 데크층(지하 1층)은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로 이용되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은 데크층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동은 단지 주출입 구와 높이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위치는 102동 1호 라인 1층, 103동 1,2호 라인 1층, 104동 3,4호 라인 1층, 105동 3,4호 라인 1층, 106동 1호 라인 1층, 3호 라인 1층, 107동 5호 라인 1층, 109동 1호 라인 1층, 110동 1호 라인 1층, 111동 1호 라인 1층입니다.
- 101동 및 111동 지상 1층 앞에는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이, 108동과 109동 사이의 지상 1층에는 보육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해당 동 저층부 등 일부세대는 각 시설 이용자로 인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 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동통신구축지원센터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동통신 품질 등에 의한 안테나 추가 여부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103동, 107동, 109동, 111동 옥상층
- 중계장치 설치위치 : 103동, 107동, 109동, 111동 옥상층 및 이동통신사가 지정하는 지하주차장, 단지외부 부분
- 폐기물보관시설(쓰레기분리수거장) 위치는 102동 후면, 103동 후면, 106동 후면, 107동 측면, 108동 측면, 110등 측면, 111동 후면 등 총 7개소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과 인접되어 있는 101동, 111동 일부 저층세대는 당해 시설 이용자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지형을 이용한 데크층(지하1층)으로 108동, 109동, 110동,111동 저층 세대의 시야가 차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108~111동)에 도로와 단지 사이에는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데크)와 높이차가 있는 부위에는 데크 외벽과 지하층 일부외벽이 노출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남측 주출입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는 지하주차장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어의 손끼임방지 의무화로 거실에 면한 도어에 시공되며, 본공사 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사항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 대비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 설치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은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강화대리석, 강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붙박이장류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높이·전기용량 차이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은 본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석은 석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악세서리 위치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서리류 및 부자재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설치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자재, 주방상판,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벽지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열림 방향,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가구, 신발장, 침실붙박이장)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됩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세탁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환기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마루 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의 특성 상 뒤틀림·변형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욕조. 샤워부스. 주방가구. 화장대. 붙박이장 등 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천장에 설치되는 빨래건조대는 발코니 크기에 따라 사용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국내 생산되는 석고보드는 재생펄프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재생펄프로 사용되는 종이 중 컬러 인쇄된 종이가 섞여들어가 희석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료가 벽체에 배어나올 수 있으며 이는 시공 및 제품의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문 개폐 시 욕실화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대피공간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문짝모서리 상,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욕실 내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천장에는 상부세대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입면)에 환기 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거실(스탠딩)과 안방(벽걸이)에 기본으로 매립되어 설치됩니다(단, 플러스옵션 항목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지 않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공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드레인 / 선홈통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랑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 가 아니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공사 마감(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한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T 주택형(옥외공간형)과 관련된 사항

-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망권 가림, 소음 및 진동, 악취 등 사생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 수전이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난간의 재질, 색상 및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 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형 타입 세대의 우수드레인 설치에 따라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형 타입 세대가 위치한 상층 세대는 우천 시 옥외공간 상부에 설치되는 캐노피에 의한 빗물 튀김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으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공간형 타입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옥외공간 유무 및 형태와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세대의 옥외공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옥외공간형 타입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난간의 제조사, 설치 위치, 높이와 형태, 재료, 고정 방식, 디자인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사업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건축변경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포된 홍보물은 분양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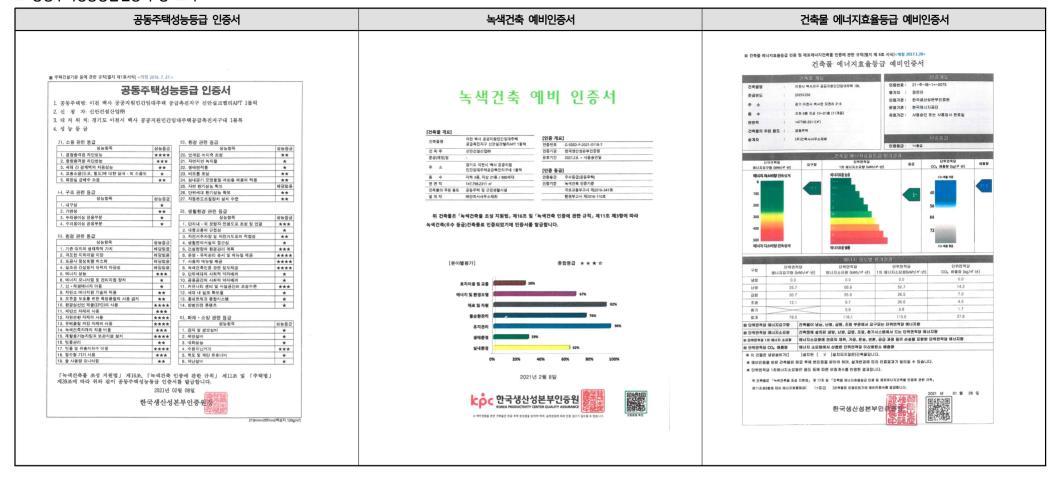
- 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변경허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의 각호

의무사항		적용여부	적용내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가. 단열조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준수	
	다. 기밀 및 경로방지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가. 설계용 외기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다.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다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라.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마.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바.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사.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가.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다. 조명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라.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마. 단지 내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이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등 표기



IX

기타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판단 관련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한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 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2의 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①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③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소형·저가주택등':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수도권 1억 3천만원 / 수도권 외 8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함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의2)

- "소형·저가주택등"의 정의 :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포함)
- "소형·저가주택등" 특례 : 상기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사례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로,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 사례2)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등"의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 특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에만 적용되며, 특별공급에서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 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 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기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란은 접수받은 담당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여유부 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일정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합니다.

■ 입주예정일 및 사전방문 관련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 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문고,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X

감리 및 보증 관련 안내사항

■ 감리자 및 감리 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계림건축사사무소	(주)진광건설엔지니어링	(주)태양유니스	(주)태양유니스
감리금액	2,688,241,300	626,500,000	234,575,000	116,875,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 대상 제외사항 등

보증서 번호	보 증금 액	보증기간
제 01212022-101-0001900호	198,119,88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을 의미합니다.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 하지 않은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 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인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 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 2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보증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ΧI

사업주체 관련 안내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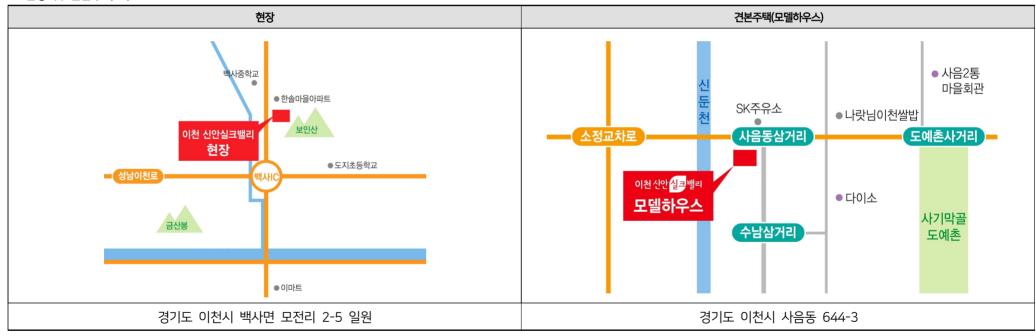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자(사업주체)	신안건설산업(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성산동)	110111-0223563
시공자	신안건설산업(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성산동)	110111-0223563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644-3

■ 홈페이지: http://silkvalley-ic.co.kr/

■ 분양문의: 1577-0034

■ 현장 및 견본주택 약도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및 편집 과정의 특성 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관계 법령과 상충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